영등포구의회
제126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2. 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1월 29일

○ 회부일 : 2007년 1월 30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의 실행을 현재 "혁신기획단"의 행정혁신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단의 명칭 및 업무를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 "혁신기획단(한시기구)"을 "창의혁신단(한시기구)"으로 부서명 개정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생 략

- 사 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생략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직속하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두었으며

그동안 우리구의 경우 혁신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직은 혁신분권팀이 기획예산과에 2004년 7월 20일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12월 22일 임시조직인 혁신기획단을 설치하여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균형발전팀, 고객만족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혁신기획단 구성 이래 추진된 주요혁신업무 수상실적은 2005년 혁신브랜드사업 대통령상, 행정혁신평가 국무총리상 수상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2006년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과 지식행정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의실현을 현재 “혁신기획단”의 행정혁신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기구 명을 변경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적극적 행정체제 확립을 위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창의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2. 8

보고자 : 김 완 섭

붙 임 : 관련법령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1.12.19>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19>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신설 2001.12.19>
⑥삭제 <2004.12.18>